

제52-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19:00

■ 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한국언론학회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진행 순서

1. 성원 보고

2. 개회 및 학회장 인사

3. 안건 심의 및 의결

[1호 안건] 한국언론학회 3개 학술지 공통 적용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정

[2호 안건] <한국언론학보 규정> 통합·개정

4. 폐회

[첨부 1] 한국언론학회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첨부 2] 한국언론학보 규정 (2026.10.1.개정)

[첨부 3] IRB 관련 제52대 이사진 의견

사회: 정성은 회장

기록: 김우정 사무국장

1. 성원 보고

참석 이사: 12명

- 온라인(zoom) 참석(12명)
- 회장: 정성은(성균관대)
- 차기 회장: 홍경수(아주대)
- 부회장: 김유정(건국대), 민영(고려대), 박진규(서울여대)
- 이사: 강금량(성균관대), 김형민(충남대), 심민선(인하대), 이종희(인천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종숙(고려대학교), 진보래(중부대), 최민음(동덕여대)
- 배석자: 1명
- 정동훈(학술지위원회 위원,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광운대)

위임: 41명

- 학회장 위임(41명)
- 부회장: 임종수(세종대)
- 이사: 고문정(네이버), 권예지(KOBACO), 김대원(카카오), 김범수(동국대), 김상연(광운대), 김지현(한양대), 김현석(서울대), 김형지(전파진흥원), 남윤재(경희대), 박승일(캣츠랩), 박찬경(경북대), 방희경(성공회대), 사영준(서강대), 선호(CJ), 송해엽(국립군산대), 송현진(연세대), 신우열(전남대), 유수정(KBS), 유우현(인천대), 유용민(전남대), 이상규(강원대), 이상진(SBS), 이선경(고려대), 이소은(부경대), 이신혜(부산대), 이영희(한양대), 이윤복(충남대), 이정현(계명대), 이재길(한림대), 이해수(서강대), 정다운(성균관대), 정미영(동명대), 정용복(제주대), 정용찬(홍익대), 조수진(장신대), 최수진(경희대), 최일도(한국언론진흥재단), 최지향(이화여대),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황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불참: 5명

- 김정한(차의과학대), 박소영(조선대), 박혜영(한신대), 봉미선(EBS), 이현우(한국언론진흥재단)

※ 재적 이사 58명 중 참석 12명, 위임 41명으로 성원이 충족됨.

2. 개회 및 학회장 인사

- 진보래 총무이사가 성원 보고를 하다.
- 정성은 학회장은 성원 총족을 확인하고, 오후 7시 5분 제52대 제4차 임시이사회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정성은 학회장은 2026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민영 부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보래 총무이사를 비롯한 조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다.
- 홍경수 차기 학회장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를 전하다.

3. 안건 심의 및 의결

[1호 안건] 한국언론학회 3개 학술지 공통 적용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정

정관 6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회원 및 준회원 승인, 단체회원 승인,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 2명의 부회장을 두는 경우 회장유고시 회장직무 대행자 선출, 회원의 제명, 회장 추천위원회 무기명 선출직 위원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선거위반행위 제재 결정, 연구회의 통폐합, 연구회 신규 창설 승인)

② 학술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③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

- 정동훈 학술위원회 위원이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에 대해 설명하다.

I. 제안 배경 및 경과

○ 목적

한국언론학회의 기존 <연구윤리강령>과 <연구윤리 실천요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 및 국제 출판윤리 기준(COPE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한국언론학회 산하 3개 학술지(<한

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이론>, <Asian Communication Research>)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술지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 경과

2026. 6. 23. 학술지위원회 제3차 회의: 한국언론학회 3개 학술지에 공통으로 적용할
생성형 AI 관련 연구윤리규정 신설 필요성 논의
2026. 8. 3. 학술지위원회 제4차 회의: 정동훈 위원(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이 마련한
규정 1차 초안 보고 및 위원회 검토
2026. 8. 10. 유홍식 위원 검토: 규정 문구 및 법적·표현적 정합성 검토·정비
2026. 8. 21. 백혜진 위원장, 정동훈 위원, 심민선 위원 회의: 규정안 세부 검토 및 AI
연구윤리 세미나 논의 결과 반영
2026. 8. 31. 백혜진 위원장 추가 검토·정리 후 수정 초안 공유
2026. 9. 20. 김균수 위원(커뮤니케이션이론 편집위원장), 안순태 위원(Asian
Communication Research 편집위원장), 이철주 위원 사전 서면 검토 및
조문별 세부 의견 수렴
2026. 9. 22. 학술지위원회 제5차 회의: 주요 쟁점 조항 논의 및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정안 승인
2026. 9. 24. 백혜진 위원장, 정동훈 위원, 심민선 위원 회의: 학술지위원회 승인 내용
반영하여 이사회 제출용 최종 제정안 정리

II. 의결 사항

- 제1호 안건: 한국언론학회 3개 학술지 공통 적용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
정

□ 의결 사항 1-1.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정의 건

-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중 제6조 (연구대상자 보호 및 생명윤리) 2항 (관련
법령 또는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 대상에 해
당하는 연구의 경우 투고자는 해당 승인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에 관해 사전에 제
출된 이사들의 의견을 정성은 회장이 대신 발표하다 (첨부 3).
- IRB 승인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이사들에 간에 서로 상이한 견해와 입장이 있음을

참석자들이 확인하다.

- 정성은 회장이 1호 안건과 관련하여 제6조 2항(IRB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의 승인에 관해 의결하는 것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 홍경수 차기회장이 제안된 학술지연구윤리 규정안 중 제6조 2항(IRB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승인할 것을 동의(動議)하다.
- 이종이 이사가 동의된 안에 대해 재청(再請)하다.
- 구두로 표결을 실시한결과, 반대 의견이 없음이 확인되어,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학술지연구윤리 규정안 중 제6조 2항(IRB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승인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 의결 사항 1-2. IRB 관련 사항 의결의 건

- 정성은 학회장은 제6조 IRB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세미나 등을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준비하자는 취지를 설명하다.
- 홍경수 차기 학회장이 IRB에 관한 학회원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추후 <학술지 윤리규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동의(動議)하다.
- 민영 부회장이 재청(再請)하다.
- 정성은 학회장이 구두 표결을 진행하다.
-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IRB 관련 사항은 추후 세미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추후 <학술지 윤리규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2호 안건] <한국언론학보 규정> 통합·개정

정관 7장 위원회 및 기구

제28조 (학술지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1.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들의 발간 관련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① 학술지위원회

② 편집위원회

2. 학술지위원회는 학회 발행 학술지 편집위원장들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학술지의 학술성 제고 및 국제화 추진

②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추천

③ 학술지 발간을 위한 출판사 선정 및 협력

④ **학술지 논문작성 규정 협의 및 제안**

3. 학회가 발행하는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위원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학술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업무 및 권한

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발행 학술지 학술성 제고를 위해 다음을 수행한다.

1. 위원회는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논의 주체로서 제반 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기반을 마련한다.

2. 위원회는 임기 2년의 편집위원장을 학술지별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3. 학술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출판사 계약 및 협력에 관한 사안

2) 학술지 저작권 활용에 관한 사안

4.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다음의 노력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술지의 품질 향상 및 운

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발행 학술지의 규정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승인한다.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에 규정 및 개선안 논의를 요청한다.

- 정동훈 학술위원회 위원이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언론학보 규정>에 대해 설명하다.

I. 제안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한국언론학보와 관련하여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4개 개별 규정을 하나의 체계적인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한국연구재단(NRF) 학술지 평가 기준 및 최신 출판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신규 조항을 정비함. 이를 통해 규정 체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학술지 운영 및 논문 투고·심사·출판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함.

○ 통합 대상 기존 규정

논문발간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규정

투고자격과 투고논문기준

○ 추진 경과

2026. 8. 3. 학술지위원회 제4차 회의: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4개 규정 통합 및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기준 반영 1차 개정 초안을 정동훈 편집위원장이 보고하고, 학술지위원회에서 검토

2026. 8. 10-11. 유홍식 위원, 심민선 위원 검토: 규정 문구 및 조문 간 정합성 검토·정비, 신규 대조표 작성

2026. 8. 21. 백혜진 위원장, 정동훈 위원, 심민선 위원 회의: 집중 논의를 통한 수정 및 조문 체계 정비

2026. 9. 5. 수정 초안 작성·공유

2026. 9. 20. 이철주 위원 수정 초안 검토 및 주요 논의 쟁점 도출

2026. 9. 22. 학술지위원회 제5차 회의: 규정 통합 체계, 연구재단 평가 연계조항 및 사전 검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조항 논의

2026. 9. 24. 백혜진 위원장, 정동훈 위원, 심민선 위원 회의: 학술지위원회 제5차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 마련
2026. 9. 29. 학술지위원회: 이사회 제출을 위한 <한국언론학보 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II. 의결 사항

○ 제2호 안건: <한국언론학보 규정> 통합·개정

□ 의결 사항 2-1. <한국언론학보 규정> 통합·개정의 건

- 정성은 회장이 <한국언론학보 규정> 통합·개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나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
- 정성은 회장이 제안된 <한국언론학보 규정>의 승인을 동의(動議)하고 이에 이종희 이사가 재청(再請)하다.
- 정성은 회장이 구두 표결을 진행하다.
-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언론학보 규정> 통합·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 의결 사항 2-2.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제3항 추가의 건

- 정동훈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은 <한국언론학보 규정> 제10조(논문 심사 절차)에 익명 심사 원칙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다.
- 정성은 학회장은 해당 조항에 논문 심사는 저자와 심사위원이 서로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문안은 학술지위원회가 작성할 것을 동의(動議)하다.
- 이에 이종희 이사가 재청(再請)하다.
- 정성은 회장이 구두 표결을 진행하다.
- 반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언론학보>
-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언론학보 규정에 제10조에 논문 심사는 저자와 심사위원이 서로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문안은 학술지위원회가 작성할 것을 의결하다.

4. 폐회

- 정성은 회장은 학술지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 정성은 회장은 폐회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다.
- 참석 이사들이 이에 동의하다.
- 이에 따라 제52-4차 임시이사회를 오후 7시 51분에 폐회하다.

■ 작성 및 확인

위 회의록은 제4차 임시이사회 의 논의 및 의결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함.

2026년 10월 1일

작성자: 사무국장 김우정

확인자: 회장 정성은

[첨부 1]

한국언론학회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26. 10.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연구윤리강령>과 <연구윤리 실천요강>을 바탕으로, 한국언론학회가 발간하는 3개 학술지인 <한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이론>, <Asian Communication Research>(이하 ‘학술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학술지의 신뢰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학 지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이 있는 논문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논문투고자의 윤리규정 준수

제3조(표절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절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상당수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3.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가 상식화된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5. 투고자는 온라인 공개 표절검사시스템(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검사 결과지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장과 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은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은 검사결과를 확인 후 논문 표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투고자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로 저작물의 창작에 활용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자 기여도에 따른 표시 및 데이터 공유)

1.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학술 출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구체적인 연구 기여 역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투고자는 논문 작성에 활용된 연구 데이터의 공개 여부 및 보관 방법(데이터 아카이빙 등)에 대한 정책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4. 투고자는 논문 작성에 참여한 저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최초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특수관계인 저자 참여 확인서' 및 '연구 기여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본 심사 전, 연구 참여의 정당성과 기여 성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사전 내부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당한 저자 표기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심사 회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연구대상자 보호 및 생명윤리)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설문조사, 실험, 심층인터뷰, 관찰 등)를 수행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발적 동의(연구 목적·내용의 사전 고지 및 동의 획득) 등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

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관해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 및 이중투고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복게재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2.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본인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할 수 없으며,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기존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본 학술지에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을 국내외 타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거나, 반대로 타 학술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을 본 학술지에 동시 투고하는 '이중투고(동시 심사)'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적발 시 편집위원회는 공식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 부적합(Desk Rejection) 판정을 내리며, 이 건은 학술지 실적 평가를 위한 '논문탈락률'에 공식 합산한다.
4.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8조(위조 및 변조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조 및 변조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연구자는 특정한 연구결과 또는 결론을 도출할 목적으로 일차자료 또는 이차자료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실수로 인한 데이터 오류라도 이를 확인·수정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9조(왜곡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왜곡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왜곡이라 함은 고의로 연구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2.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제10조(논문의 수정)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저작권 침해 확정)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저작권 침해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확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2조(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기준)

1. 대형언어모델(LLM)을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는 연구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문의 저자로 기재될 수 없다.
2. 투고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에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사실과 범위(도구명, 활용 목적 및 방식)를 방법론절 또는 논문 말미의 선언부(AI Disclosure)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문법 교정, 문체 개선 및 번역 등 어학적 보조(AI-assisted editing)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명시 의무를 면제한다.
3. 투고자는 연구 수행 단계에서 미공개 연구데이터, 인터뷰 자료 및 개인정보 등 보안과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AI 시스템에 입력되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AI 도구가 제시한 요약, 통계 분석, 수치해석, 인용 정보 등은 저자가 그 정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AI 산출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학술적 오류 및 연구윤리 위반(위조·변조·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AI 도구를 악용하여 위조·변조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논문에 포함한 중대한 연구부정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 중단 또는 게재 철회 조치를 취하고 제21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준수

제13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보편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소속 기관 및 학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준수

제16조(기간 준수 및 심사 회피)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 스스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투고자와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17조(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18조(투고자의 존중)

1.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논문심사결과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제19조(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및 심사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2.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평가를 위해 획득한 논문 등의 평가자료를 대형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단, 심사위원 본인이 작성한 심사평의 문법 오류 수정이나 문체 개선, 윤문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투고 논문의 고유 내용이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제20조(제보 및 심사중단)

1. 제보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구윤리 규정의 위배로 제보된 논문이 심사 중인 경우 심사를 중단한다.

제21조(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되거나 인지된 사안을 한국언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이후의 조사·심의·의결·징계 및 후속조치는 한국언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구윤리 동의)

논문투고자, 담당편집위원 및 심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한다. 논문투고자가 연구윤리 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교육부·한국연구재단과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22일 학술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10월 1일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시행한다.

[첨부 2]

한국언론학보 규정

(개정일 2026년 10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에 의해 발간되는 학술지는 <한국언론학보>(이하 ‘학보’)라 칭하며,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으로 한다. 학보의 발간은 한국언론학회 산하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기존의 「논문발간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규정」 및 「투고자격과 투고논문기준」을 통합하여 학보의 운영·출판 및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보 운영의 투명성과 논문 심사의 엄정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발간)

1. 학보는 연간 6회 발행하며, 각 호의 정규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2월 말일, 2호: 4월 말일, 3호: 6월 말일, 4호: 8월 말일, 5호: 10월 말일, 6호: 12월 말일
2. 편집위원회는 규정된 발행주기를 준수하며, 학보에 게재 확정된 논문은 정규 발행일에 맞추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은 늦어도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누락 없이 완료하여 발행의 정시성을 확보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위원회가 추천하고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 부편집위원장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4. 학보 운영의 객관성과 대외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편집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회 임원진 또는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부 소속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 내 주요 업무의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로 구성된 편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특별호 간행을 위한 특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편집위원장은 학보의 편집, 심사 및 발간 업무를 총괄하여 정규 발행일자에 맞추어 발간하며,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논문의 게재 여부 확정을 포함하여 학보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다.
2. 부편집위원장은 소관 분야의 투고 논문을 관리하고, 본심사 회부 전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등 실무적 총괄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이사는 학보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서 원문 등 제반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전공 분야별 적합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전문 심사위원 위촉 및 추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장 논문 투고 및 출판 기준

제6조(투고 자격)

1. 본 학보에는 학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비회원이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투고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투고 논문 분량 및 양식)

1. 투고 논문의 분량은 초심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국문초록·본

문·표·그림(세로 1cm당 70자로 계산)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단, 영문초록, 참고문헌 및 부록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분량을 초과한 논문의 심사 진행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2. 이외 투고 논문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학보> 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

제8조(논문 투고의 다양성)

1. 학보의 학술적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심사 대상 기간(또는 발행 연도) 동안 접수된 전체 투고 논문 중, 주저자(책임저자, 제9조 제2항)의 소속기관이 동일한 논문투고건의 비율은 2/5(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논문투고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사 절차가 최종 종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투고 후 철회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사 부적합으로 처리되어 본심사에 회부되지 아니한 논문

② 본심사에 회부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

③ 본심사에 회부되어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

3. 편집위원회는 특정 기관 논문투고건이 제1항의 비율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 접수, 심사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저자 표기 기준 및 주저자의 정의)

1. 저자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고, 이후 공동저자를 기여순으로 명기한다. 교신저자(책임저자)는 저자 명단에서의 위치와 관계없이 별표(*) 등의 표시를 통해 명기한다.

2. 학보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인증평가 지표 중 논문 투고 다양성 항목을 산정하는 주저자(책임저자) 기준은 논문의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단독저자(1인 저자)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단독저자를 주저자로 간주한다.

3.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심사 연락 및 출간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와 소통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대표성을 가진다.

4. 논문의 저자가 특수관계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포함)을 공동 저자로 포함하여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투고 시점에 편집위원회에 '특수관계인 저자 참여 확인서' 및 '연구 기여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당한 저자 표시로 확인되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즉시 중단하며, 사후 조치를 위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1. 투고된 논문은 본심사 진행에 앞서 소관 분야 부편집위원장이 학보 주제와의 부합성, 학술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한다. 사전 검토 결과가 심사 회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부적합(Desk Rejection) 처리를 건의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투고자에게 본심사 미회부 사실을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 부적합 논문은 편집위원장과 담당 부편집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에서 최종 처리한다. 편집위원장과 담당 부편집위원장은 구체적인 심사 부적합 사유를 각각의 심사 의견서에 기록하며, 해당 논문은 학술지 인증 기준에 따른 논문탈락률 산정에 포함한다.
3. 본심사는 저자와 심사위원이 서로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전 검토를 통과하여 본심사에 회부된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개별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4. 2인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판정이 대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 부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술지 기준 등을 정성적으로 종합 심사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5. 논문 투고자가 제4항에 따른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하여 공식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초심 및 재심 판정에 관여하지 않은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가 심의를 거쳐, 저자의 이의신청 사유와 기존 심사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정(기존 판정 유지 또는 특별 재심 회부 등)을 내린다.

제11조(논문 판정 기준 및 조치)

1. 투고 논문은 논문심사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의 4단계로 판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 ① 당호 게재: 본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별도의 수정 없이 해당 호에 게재한다.
 - ② 수정 후 당호 재심: 해당 호에 게재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의 수정 확인을 거쳐 당호에 게재한다. 단,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으로 처리된다.
 - ③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재심사 과정을 거쳐 '당호 게재' 또는 '수정 후 당호 재심'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한다. 초심에서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판정 이하를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도 동일한 판정이나 그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 부적합'으로 최종 처리한다.

④ 게재 부적합: 본 판정을 받은 원고는 학보에 재투고할 수 없다.

제12조(관련 일자의 표기)

1. 논문 심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보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는 최초 투고일, 게재 확정일, 최종 논문 수정일을 표기하며 각 일자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최초 투고일: 투고자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고 제출을 완료한 후,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쳐 본심사 회부가 확정되어 시스템에 공식 접수된 날짜로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게재 확정일: 심사 및 판정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게재 승인을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짜로 한다.

③ 최종 논문 수정일: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투고자가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 원고를 제출한 날짜로 한다.

제13조(출판 비용의 투명성과 고지)

1. 학보는 다음 각 항의 투고료, 게재료 및 분량 초과 비용 등 논문 처리 비용을 투고 안내, 학회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자가 투고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2. 학보의 투고료는 저자의 회원 자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한다.

① 회원(정회원·준회원 포함): 30,000원

② 비회원(모든 저자가 비회원인 경우): 80,000원

3. 학보의 기본 게재료는 저자의 소속 및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한다. 저자 중 1인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① 연구비 지원 논문: 200,000원

② 정규직(지원 없음): 100,000원

③ 비정규직(지원 없음): 50,000원

4. 출판 논문의 분량이 원고지(200자) 환산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1매당 2,000원의 초과게재료를 부과한다.

제14조(저작권)

1.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별지 서식의 저작권 이용·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학회에 귀속된다.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논문은 게

재할 수 없다.

- ① 출판권
- ② 디지털제작권
- ③ 전송권
- ④ 배포권

2. 학보는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JCI)에 저작권 정책을 등록하며, 게재 논문의 원문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의 이용료 없이 무상으로 공개한다.

제4장 논문 심사 및 발간 관리

제15조(심사위원 위촉 및 공정성 의무)

1.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보 운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투고자의 소속기관(동일 기관 배제) 등 이해충돌 요소를 엄격히 고려하여 선정 및 배제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 본인의 학문적 관점이나 해석이 심사자 개인의 견해와 상충된다는 사적인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학술적 기준에 의해서만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을 규정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해야 하며, 만약 본인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심사 결과의 통보 및 수정 의무)

1. 편집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최종 확정된 심사 판정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공식 통보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수정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투고자가 심사 및 판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술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이의신청서 또는 수정거부 사유서)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초심에서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원고 제출 기한은 심사 판정을 받은 호를 기준으로 이후 2호(4개월) 이내의 차기 논문 제출 마감일까지

로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수정 원고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은 자동 '게재 부적합' 처리한다.

제17조(원고 교열 및 발간 관리)

1.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가 학보 편집 과정에서 원고 교열 마감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논문작성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의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게재 연기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편집이사는 그 사유와 조치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 또는 서면 기록으로 남겨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제1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29일 학술지위원회에서 승인하고 2026년 10월 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기존 「편집위원회규정」의 개정 경과)

학술지위원회(2025. 12. 3.) 개정

③ (기존 「논문심사규정」의 개정 경과)

제18대 학보편집회의(1991. 12. 23.) 제정

제19대 학보편집회의(1992. 10. 16.) 개정

제23대 학보편집회의(1996. 8. 24.) 개정

제28대 학보편집회의(2001. 11. 17.) 개정

제28대 학보편집회의(2002. 3. 2.) 개정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3. 15.) 개정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5. 16.) 개정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7. 15.) 개정

제30대 학보편집회의(2003. 10. 25.) 개정

제32대 학보편집회의(2005. 11. 19.) 개정

제33대 학보편집회의(2007. 5. 11.) 개정

제36대 학보편집회의(2010. 1. 19.) 개정

제43대 학보편집회의(2017. 9. 15.) 개정

제44대 학보편집회의(2018. 7. 13.) 개정

제52대 학보편집회의(2025. 12. 3.) 개정

[첨부 3]

IRB 관련 제52대 이사진 의견

1. IRB 승인 의무화 찬성 의견

- 지금 사회는 물론 학술지 환경에서 데이터 문제가 일반화되고 AI 사용 또한 점점 더 이슈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IRB를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 회의자료로 배포에 주신 안건에서 IRB 관련 규정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는 안을 확인했는데 저는 현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의무와 권고 모두 크게는 학문적 엄밀성과 학문의 다양성, 개방성의 취지에서 장단이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한국언론 학회 학술지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숙의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인간대상 연구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를 다룬 논문이 투고될 경우 편집위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리 2년이 라는 정해진 시한을 두어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까 사료됩니다.
- (1) 제6조 2항("관련 법령 또는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 투고자는 해당 승인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 문항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는 연구 시작 전에 IRB 승인을 받는 것(심의 면제 승인 포함)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을 '권고'하는 것은 어색해보입니다.
- 현재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대학 및 연구 기관별 IRB 승인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연구 진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사회과학 및 언론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등, 연구자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 절차로 작용하고 있다는 고충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보가 IRB 승인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구자 본인과 학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한국언론학보』 규정은 '권고'에 머물러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대학과 국가 연구 과제 가이드라인(생명윤리법)은 이미 연구자에게 사전 IRB 승인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보 규정이 권고라는 이유로 IRB 없이 투고 및 게재되었다가, 추후 소속 대학의 내부 감사나 학위 논문 검증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되어 어렵게 게재된 논문이 취소되거나 학위 자체가 무효화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보 차원의 의무화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연구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학술지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해외 SSCI급 저널은 물론 국내 주요 KCI 우수등재지들 역시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IRB 승인(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예외 없는 필수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언론학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언론학보』가 현행 권고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술지의 윤리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국내외 연구 환경과의 괴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연구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IRB 승인 및 심의면제서 제출 의무화는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다만 IRB 의무화는 질적 연구자와 독립 연구자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사실입니다. 인터뷰나 참여 관찰은 면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데다가, 연구 진행 중 설계가 바뀌는 특성 때문에 사전 고정형 심의와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전히 논문 '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자들에게만 더 높은 문턱이 될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게다가 독립 연구자들은 공용 IRB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보완 없이 의무화를 한다면 의도와는 달리 특정 주체들의 투고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연구 윤리 기준을 높이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그것이 특정 연구자에게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작은 의견입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는 그동안 연구 진행 하면서 필요한 경우 IRB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에도 찬성합니다.
- 저는 사실 의무화하는데 동의합니다. 저희 학교도 매우 느리고 까다롭지만 안 할 순 없는 거라서요. 이걸 안 하고 출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해당 학교에 IRB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공저자의 학교에서 대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 사항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의무화 찬성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논문을 많이 쓰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꼭 찬성 반대로 입장으로 표명해야 한다면 저는 찬성 입장을 제출하겠습니다.
-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다만 유예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대로 학교마다 프로세싱이 다르고 독립연구자분들 이슈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도 요즘 해외 주요 학술지도 기본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다만, 사유를 기재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irb승인을 명시하는걸 디폴트로 하되 미승인시 사유를 acknowledgement 등으로 처리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 저도 장기적으로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IRB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학회가 규모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선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학마다 IRB 운영 여건이나 심의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IRB는 원칙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 뒤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자료수집을 마친 연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두고, 학회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자료수집을 시작한 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의 경과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심의면제 대상 연구까지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권고의 경우 해당되는 연구라도 안받아도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여러 학술지 윤리규정들을 따르면 계속 반대할수만도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의무화로의 방향성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일률적 의무화가 아니라 IRB 심의대상 여부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RB 승인 대상 연구와 문헌연구와 역사연구, 공개된 자료의 분석 등 비대상연구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럴경우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요청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 사실, 의무화 논의의 찬성과 반대에 앞서 IRB 대상연구의 정의, 투고논문의 IRB 표시방법, 사후승인 금지, 독립연구자 경우 등 여러 논의 사항, 규정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권고”로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명확한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 조심스럽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첫째는 일단 사회과학, 인문학 연구 특성상....행정부담이나 형식적인 서류작업이 너무 커질거 같습니다. 둘째는 재난보도나 선거, 인터뷰, 미디어이용 등 설문은 위험수준이 다른텐데....모든 연구를 동일한 강도로 절차를 거친다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저는 IRB 의무화 보다는 권고, IRB와 관련한 내용을 적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해외 학술지에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해당 부분을 적게 하는 상위 학술지들을 참고해보면 어

떨까 싶습니다) 학교 소속이 아니거나, IRB가 없는 곳은 IRB를 거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외부에서 IRB 심사비를 내고,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합시다만, 많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원활하지 않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수주한 과제의 경우, 정해진 연구기간이 있어 IRB를 할 경우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 IRB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적 보호라는 IRB의 기본 취지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의 전 과정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확정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에서는 현장에서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면서 질문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연구 참여자 역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의 IRB 심사 양식이나 절차는 실험연구나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연구의 논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대상자 수, 표집 기준, 질문 내용, 연구 절차 등을 연구 시작 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연구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연구문제와 질문을 정교화해 가는 질적연구의 특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건 진행과 관련해 질적연구자들 의견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일률적인 '의무'보다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 검증은 소속 기관의 몫인데 학술지가 승인서 제출을 강제하는 건 중복 심사라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학교와 학술지의 판단이 다른 경우), 말씀처럼 대학마다 IRB 편차가 너무 심해 IRB 심사의 회색지대에 있는 비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예컨대, 이론, 빅데이터 분야)나 소속이 불안정한 연구자들에게는 투고 장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규정은 권고나 서약 정도로 유연하게 열어두고, 만약 추후에 문제가 되는 논문이 나온다면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게재 취소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저는 IRB 승인 이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학술지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 IRB 기관에서 학기별로 1회 정도 진행되고 있고 심사하는데 2-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심사자들이 심사하는데 있어, IRB 심의 신청자들과의 마찰도 간혹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도 IRB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는 연구든 아니든 IRB 받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 오히려 IRB 각 기관에 이 정도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적당하고 필요하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위험과 연구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IRB 의무화는 사회과학 연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연구 수행과 출판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IRB 승인 자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연구의 위험도와 유형에 따라 IRB 승인·심의면제·비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그 판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IRB 승인 의무화 반대 및 권고 유지 의견

- 앞으로 승인의무화는 필요할거 같은데요. IRB가 느리게 진행되는 문제 때문에 유예 필요해 보입니다.
-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IRB가 매우 느리게 운영되는 곳 중 하나가 아마 경희대가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한 연구들은 모두 다 IRB 심의를 거쳐서 학술지에 투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모든 연구에 대해 의무화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두어 그 조건 하에서만 의무하는 것이 어떨지요? 예를 들어, 인체에 직접 실험을 하는 경우라던가, 빅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라던가 등이요. 실제로 IRB 심사 결과, 심의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연구들까지 IRB 심사를 의무화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특히 요즘 미디어 환경에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연구들의 발간을 늦추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듯합니다. IRB 심의에 대한 논의가 혹시 AI와 관계되어 촉발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무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의 저의 소견은 위와 같습니다.
- 일반론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IRB 승인을 의무화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화를 하려면 어떤 연구가 IRB 승인이 필요한지 규정에도 명확히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현실적으로 모든 연구에 일률적인 승인을 요구하기 보다는 연구 위험도에 따라 승인, 면제, 예외를 구분하고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 실험, 민감정보 수집, 취약계층 대상 등 윤리적 위험이 큰 연구는 승인대상 / - 일반적인 익명 설문, 통상적인 전문가 인터뷰 등은 면제)
- 심의승인에 대해서는 IRB 필수가 아닌 권고안에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소수자 연구를 하고 있어, 연구 과정에서 매년 IRB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IRB 심의 절

차를 밟는 데에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IRB의 연구대상자 보호와 연구 윤리를 위한 심의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IRB 심사 기준과 절차가 의생명과학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나 질적·현장 연구가 지닌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큰 마찰과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를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구 수행에 앞서 절차를 밟는 데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또, 연구 분야에 맞지 않는 서류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자료를 갖춰 내는 경우가 빈번해 IRB 제도가 의도한 연구 윤리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미디어학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참고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연구에 실린 인터뷰 내용에 저 역시 크게 공감했던 글입니다.

참고: 김선기, 권수빈 외 (2023).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갈등 경험 및 인식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22619>

아울러 언론학 연구는 서베이나 실험 연구 외에도 비판커뮤니케이션, 텍스트/담론 분석, 역사문화 연구, 정책 분석 등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거나, 기관에 따라 면제 확인을 받는 역시 행정적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IRB 심의가 수시로 이뤄지지 않고 전월 서류 접수 후 익월 심의가 진행되어 면제 확인에도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IRB승인은 윤리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내 대학의 IRB승인에 대한 절차 차이가 큰 편이고 진행도 너무 느려서 연구 진입 장벽이 높을 것 같아 우려됩니다. 기본적으로 IRB승인이 있어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텐데 양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신진학자들의 고충도 적지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적연구에 IRB가 요구되는 경우가 더 많다보니 연구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질적연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조건일 것 같습니다. 다만 AI 등 여러 위협요소가 있는 가운데 연구윤리 강화는 필요해보입니다. IRB승인 의무화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IRB의 취지에 준하는 언론학보의 윤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최소한 IRB 윤리기준을 준수했음을 서술하거나 서약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제 의견은 IRB 승인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연구윤리를 강화하자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학 연구는 대상과 방법이 다양해 어떤 연구에 승인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가 오래 걸리면 연구와 논문 발표가 지연될 수 있고, 심의를 받기 어려운 연구자에게는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적용 기준과 연구자 지원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근 해외저널은 투고시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받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IRB를 위한 조직이 없거나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운영되거나 생명공학 계열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도 2개월마다 운영하는걸로 바뀌지 채 몇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운영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IRB 승인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서, IRB 승인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IRB 승인을 의무화하 것보다는 권고가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논문심사위원이나 위원장에게 내리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개별 심사위원이 보고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인데 승인 절차가 누락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저자에게 타당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더 문제가 된다면 리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에디터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데스트 리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해외 학술지의 경우 IRB 승인 내용이 없는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알아서 미리 그 과정을 밟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술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학술지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언론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라면 IRB 승인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규정과 지침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IRB가 필수적으로 고려되는것이 물론 바람직하고, 따라서 규정에 반영한다면 권고라는 표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규정에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고, 편집위원회가 요청할 시 IRB 승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IRB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수행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당장 IRB 자료 제출 필수 규정을 넣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기관들의 IRB가 원활히 운영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무화는 반대입니다. IRB process 가 말씀하신것처럼 학교마다 매우 다르고 예측이 불가해서 의무화하는 경우 투고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막혀버릴수도 있고요 주요 대학이 아닌 곳들에서는 아직 제도도 잘 정비되지 않은 곳들이 있을 듯합니다. 의무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이슈는 리뷰 과정에서 리뷰어들이 강하게 코멘트하는 식으로도 대응(?)이 가능할거같은 생각입니다. IRB승인을 득하지 않는 종류의 연구는 또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한 예외규정의 형평성 문제 등도 생각해야 하고 나아가서 IRB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윤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양심과 신뢰에 맞기고 문제가 생길때 위반을 본보기로 처리해야 할 (즉 blacklist 방식으로) 문제이지, 이

를 topdown 형식으로 강제하는, white list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 학술논문의 경우 알게 모르게 대학원에서의 학생들과의 협업이나 석박사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IRB를 강제하게 되면 학생들의 졸업 timeline 자체가 그만큼 밀려버리는 일도 있을듯 합니다.

- irb 의무화가 시대적 추세라면 우리 언론학계를 대표하는 학회가 연구 윤리에 관한 시대적 요구와 기준을 도외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 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혁신을 오히려 앞장서는 것은 언론학회가 할 수 있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학회원들에게 의무로 요구하려면 전제는 학회원들의 소속 기관마다 irb 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도 활용 상의 접근성, 활용 기회 측면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나 연구기관마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irb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 연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론도 오래전부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장 (조건부라도) IRB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나 정도의 생각입니다. 2년 유예조건으로 윤리 규정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2년이라는 시기 안에 현재 irb와 관련해서 사회과학계가 느끼는 문제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한 문제라, 2년의 근거도 조금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면이든 조건부든 irb를 지금 당장 의무화 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IRB 승인 의무화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뷰 원자료나 개인정보가 AI 도구에 입력될 위험이 커졌습니다(개정안 제12조 3항). 연구 대상자 보호를 제도로 뒷받침할 필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IRB가 느리고 까다롭게 운영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소속 기관에 IRB가 없는 연구자나 대학원생도 적지 않습니다. 곧바로 시행하면 설문·인터뷰 연구를 중심으로 학보 투고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안대로 '권고'를 유지하고, 2년 유예 조건으로 의무화 방향을 정해두는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투고 현황과 회원들의 IRB 접근 여건을 지켜보면서 시행 시점과 범위를 다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저 역시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윤리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로 인한 투고 건수 감소, 독립연구자 등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심의 면제 및 자체 윤리 서약'을 포괄하는 차등화된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 익명 설문조사, 공개 데이터, 언론보도 2차 분석 등은 면제하거나, IRB 접근이 어려운 연구자, 대학원생 등을 위한 학회 차원의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체크리스트) 적용 등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연구할 때 Irb 승인을 꼭 받는데요, 행정적 절차의 까다로움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사회과학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지 자체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술지윤리규정에 irb 승인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권고 정도로 남겨두는 게 어떨까 합니다. ai 활용이 고도화하면서 연구윤리 자체가 새롭게 논의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적극적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적극적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Irb가 대학이 아닌 곳에서는 받기가 어렵기도 해서요...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 irb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소속 연구자가 아닌 연구자와 공동연구나 단독 연구를 할 경우 irb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까다롭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도 있구요... 의무화는 현황 파악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